

문맹인 난민신청자 사례에서 드러난 난민신청제도의 문제점

난 민법 제 2 장 5 조 3 항은 [③ 난민인정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글을 쓸 줄 모르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하는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자와 함께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EUAA(European Union Agency for Asylum) 의 실무자를 위한 안내서:

문맹이나 교육받은 정도가 낮은 비호신청자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와 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전달과 소통에서 고려해야 하는 점을 강조함.

낮은 정규교육 수준은 **문해력(디지털 문해력 포함)**에 영향을 미치며, 서면 또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 접근성**을 제한하며, 교육 수준이 제한적인 지원자는 추상적인 용어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며, 공식 교육을 제한적으로 받거나 부족하게 받았을 경우 비호신청자 **개인 삶의 영역 밖의 문제에 대한 부분(예컨대, 행정 절차)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함.**

사례>>

대리인에게 맡긴 **난민신청서**에 자신이 구술한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 적혀있다는 것을 면접조사를 통해 발견했지만, 그 이후 다시 접수한 **재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이어지는 심사 과정에서도 법에 명시된 어떠한 행정 조력도 출입국으로부터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면접조사**에서는 문맹인 신청자를 대상으로 **아랍어 통역의 오역 남발과 월권행위**가 수 차례 발생하였지만 글을 읽지 못하는 신청인은 그 사실을 시민단체(난민인권센터)의 조력으로 **난민면접녹화영상**을 시청하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면접조사를 한 지 3년이 지나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면접을 토대로 **불인정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난민신청서를 대리인을 통해 제출한 신청인은 체류비자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사실을 전혀 듣지 못하여 본의 아니게 미등록체류자로 분류되어 범칙금 150 만원을 청구 받고 그 때문에 체류비자를 받지 못하여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고 휴대전화를 만들 수 없게 됩니다.

사례에서 드러난 난민심사제도의 문제점

1. 대리인(출입국 직원이 아닌)이 작성한 신청서:

(1) 내용 확인 (신청인은 직접 확인 못함)

본인, 가족, 친구, 동료 과거에 위협, 부당한 대우 협박 받은 적?/ 없음

본인 or 가족 본국에서 연행, 구금, 구속 경험?/ 없음

난민신청 주장 관련된 증거자료? 기록하지 않음.

(2) 대리인과 신청인의 관계 확인, 대리인의 신분 확인 및 서명.

대리인 서약란에 기록 남기지 않음. 전화번호 이외에 대리인 신원확인을 할 수 있는 정보 없음.

(3) 신청인과 출입국의 직접 소통으로 신청서 내용 확인과 함께 난민법에서 보장하는 신청인의 권리를 통역을 통해 직접 전달하고 신청인이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함.

이 때, 신청인의 문해력 정도를 파악해서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정보를 전달해야 함.

체류비자신청 및 수령에 대한 안내 역시 직접 설명했어야 함.

(4) 체류비자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체류할 권리마저 박탈당하여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2. 난민신청절차 안내:

출입국 접수 창구 뿐만 아니라 출입국 안내 창구에 **각 언어권 출신 안내인을 상주**하게 하여 문맹인 신청자들이 글로 된 안내자료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상주 안내인에게 직접 안내 받을 수 있게 해야 함. 현재 인천출입국은 주 1 회 오전에만 아랍어 자원안내 있음.

신청서 작성:

난민법이 명시한 대로 출입국 직원이 신청서 작성을 대신해 주어야 함. 여기에 필요한 **통역과 번역도** 제공해야 함. 문맹자의 난민신청서를 작성해주는 교육받은 직원 필요함. 부실하게 작성된 신청서는 부실한 면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면접조사:

신청자의 문해력 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 면접 진행 고려해야 함.

통역인 자격: 정확한 통번역, 가감이 없는 내용 전달, 중립적인 자세와 태도, 신청자의 문해력과 교육수준, 살아온 환경을 고려한 단어 선택과(개념어, 추상어, 전문용어, 행정절차 등) 진술방식에 대한 이해(답변을 논리정연하게 구성하거나 핵심을 전달하는 방식에 대한 훈련은 교육을 통해 발전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임. 교육받은 기간과 이러한 능력은 상관관계에 있음. 신청인의 진술이 산만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진술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고 진술을 가로막지 말아야 함.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확인 하기). 조사관 뿐만 아니라 통역인의 비언어적인 소통 요소(말투, 표정, 자세 등)는 신청인의 진술에 영향을 미침.

통역의 품질을 감시할 제 3 자의 부재.

면접조사에 대한 평가:

통역이 제대로 되었는지 조사관의 면접조서 기록과 대조.

통역 품질에 대한 평가.

신청자 진술의 경향성 분석

현행 통역인 운영 외주화 문제점:

통역인이 문제가 있는 경우, 법무부는 그 책임을 직접 지지 않을 수 있음.

통역인의 질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있음.

출입국 연락:

전달하려는 내용을 문맹인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해야함. 문서와 문자 발송만으로는 출입국이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음. 반드시 신청인의 언어로 직접 소통하고 내용을 이해했는지에 대해 확인을 마쳐야 함.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예를 들면 소통 장비, 소통 채널)

COI 조사/ 이의신청/ 소송

문맹인이며 문해력에 제한이 있는 당사자로서는, 출입국이 근거한 난민불인정사유를 이해하고 잘못된 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대응 (객관적인 자료 조사와 제출)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